영등포구의회
제127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7. 3. 2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및 제출경과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발의일 : 2007년 3월 21일

○ 회부일 : 2007년 3월 21일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3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 직급 및 정수를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하여 정원 범위 안에서 수요가 줄어든 기능직 20명을 감소하고 사회복지직 10명, 보건직 2명, 지적직 2명, 전산직 1명, 통신기술직 1명, 녹지(조경) 2명 등 일반직 18명과 별정직 2명을 증원하여 조직의 경쟁력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에 두는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신설

- 별정직 6급상당 2명 신설

나. 정원조례 제2조 변경

- 집행기관의 정수 : 1,279명 → 1,277명 (-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명 → 29명 (+2명)

다. 혁신기획단 정원 기간연장

- 2007년 6월 30일 → 2008년 6월 30일

라. 직급별 정원조정

<증원내역>

- 일반직 : 총 18명
  - 9급 : +18명
    · 증가내역 : 사회복지직 10, 보건직 2, 지적직 2, 전산직 1, 통신기술1, 녹지(조경) 2
    · 사 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복지 및 지역 보건서비스 향상 등 현안 업무 추진으로 증원

- 별정직 : 총 2명
  - 6급상당 : +4명 (구본청 +2, 구의회 +2)
  - 7급상당 : -1명 (구본청 -2, 구의회 +1)
  - 8급상당 : -1명 (구의회 -1)
  - 사 유 : 지방의회 전문위원별정직 6급상당 2명 신설 및 별정직 장기근속자 정원 상향 조정

<감소내역>

• 기능직 : 총 20명

- 10급 : -20명
- 내역 : 조무원 6, 주차단속 7, 운전원 6, 집배원 1
- 사 유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능직 직급별 분포 비율에 따라 기능직 정원기준이 총 정원의 20%이나, 우리구 기능직 정원은 25.5%로 5.5% 정원 초과
  · 기능직 10급 정원이 176명이고 현원이 69명으로 현재 107명이 결원 상태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210호(2007.2.26)
◦ 서울시 조직담당관-2233호(2007.3.6)
◦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시행지침

나. 예산조치 : 조치 완료

나. 합 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07. 3. 12 ~ 3. 19(7일 간)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8조,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능직 직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기능직 정원기준이 총 정원의 20%이나, 우리구 기능직 정원은 25.5%로 5.5% 정원초과 되어 기능직 10급 정원이 176명이고 현원이 69명으로 현재 107명이 결원 상태임으로 기능직 20명인 조무원 6명, 주차단속 7명, 운전원 6명, 집배원 1명을 줄이고 구 본청에 일반직 18명과 구의회사무국에 별정직 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의 순증 없이 수요가 줄어 든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충당하려는 내용으로

- 별정직의 인력 증원은

2006년 6월 29일 개정공포 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6.7.1 시행, 2007. 6. 30일까지 동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함)에 의하여 의회 전문위원 6급상당 2명을 신설하고 별정직 장기근속자 승진적체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8급상당 1명, 7급상당 1명을 줄여 6급상당 2명을 증원하여 상계 조정하되, 조정되는 해당직렬 만큼 하위직급을 감축하려는 내용입니다.

- 혁신기획단의 정원 기간연장은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5년 12월 22일 조례 제613호 부칙 제2조 중 “혁신기획단 설치에 따른 인력” 2명에 대하여는 당초 2007년 6월 30일까지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토록 2007년 2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연장 협조되었고 2007년 3월 6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혁신전담기구의 존속기한 연장 협조요청이 있었으며

각 직렬별 증원 사유와 증원 후의 총 직렬별 총 정원은

- 사회복지직 9급 10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49명으로(구청 24 ,동 25)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 및 서비스 강화에 따른 증원

- 보건직 9급 2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16명으로(구본청 4, 보건소 12)

저소득층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 지적직 9급 2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19명으로

도로 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주소의 관리체계가 토지 지번에서 도로 명 주소로 전면 개편 작업 등

- 전산직 9급 1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10명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정보통신 업무 기능 확대로 통신기술정원 증원

- 통신기술직 9급 1명 인력을 증원하여 4명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정보통신 업무 기능 확대로 통신기술정원 증원

- 녹지(조경)직 9급 2명 인력을 증원하여 14명으로

푸른영등포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라 조경업무 확대 및 업무량 증가 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안으로 관련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서별로 면밀한 업무분석과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거쳐 조직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 속에 조직간 균형있는 정원책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하여야 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3. 26

보고자 : 김 완 섭

붙 임 : 1. 수정의견대비표
2. 관련법령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6, 1999.9.9, 2000.12.30>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등을 참작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계급내에서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를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5.16 2000.12.3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및 그 출장소

제15조 (정원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8.31>

제20조 (직급별 정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정원감축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정원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1995.5.16, 1995.12.28, 1998.8.31, 2005.2.11, 2005.10.20>
1. 시·도 및 특별시 자치구 : 정무직지방공무원, 일반직 4급이상·연구관·지도관지방공무원, 소방정이상 지방공무원, 기능직 4급이상 지방공무원, 별정직 4급상당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
2.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일반직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 지방공무원, 기능직 5급 이상 지방공무원, 별정직 5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설치하기 위하여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 각호의 정원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의 공무원정원을 다른 직렬의 공무원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8, 1998.8.31, 2004.12.18, 2005.2.11>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정원책정기준)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16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담당관 밑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5.1>
④업무량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4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또는 직급별정원책정기준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

〔별표 4〕 <개정 2003.5.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8조제1항관련)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특 별 시		62% 이상	36% 이내	2% 이내
광 역 시		66% 이상	32% 이내	2% 이내
도		75% 이상	23% 이내	2% 이내
시		78% 이상	20% 이내	2% 이내
군		80% 이상	18% 이내	2% 이내
자치구	특별시	78% 이상	20% 이내	2% 이내
	광역시	80% 이상	18% 이내	2%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고용직의 경우에는 방범원·지도원정원을 제외한다.